

◆ D-45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판례1】 : 노동조합간부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사전 허락도 없이 불법집회, 연설을 하였고, 무단이석 및 무단결근을하여 사유서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는바, 원고의 불법집회, 연설과 상사 지시불응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징계하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86. 8. 26, 서울고법 89 9)

【판례2】 근무시간에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농성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였고, 10여차례 유인물에 과격한 용어로 회사비방과 불신을 유발케하는 선동적 내용을 기재한 사실 및 사장면담을 요구하면서 복도에서 시위를 한 사실에 대한 2개월 출근정지처분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기 보다는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등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89. 3. 28, 중노위 88부노 155참조)

【판례3】 원고의 근무자세의 불성실함과 작업지시거부 및 상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근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됨. 따라서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회사가 특별히 원고만 가려서 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본 해고는 정당하다. (1990. 8. 10, 대법 89누 8217)

【판례4】 집단무단결근주도, 회사 주관 교육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하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0. 9. 18, 중노위 90부노 126)

【판례5】 평소 근무성적불량과 노사간 체결된 연장근로합의를 무시한 기본근로이후 무단 퇴근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0. 9. 21, 중노위 90부해 131)

【판례6】 원고가 근무시간중 약2시간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생산부장 ○○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자 징계하고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1990. 11. 17, 대법 90누 3683)

【판례7】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로 정당하 될 수 없다. (1992. 6. 23, 대법 92누 4253)

【판례8】 노동조합활동과는 별개로 상사의 지시, 명령거부로 징계 해고하였다면 징계 양정의 유효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3. 1. 11, 중노위 92부노 159)

【판례9】 부당한 노조속보(방송사고 은폐조작하지 마라, 총무차장은 즉사 사술을 중단하라 등의 내용포함)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감봉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1. 6. 4, 중노위 91부노 37)

【판례10】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근로관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련해 집단월차휴가를 선동하는 내용인 경우 유인물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합의없이 노조간부수련회를 이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남용여부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2. 3. 13, 대법 91누 5020)

【판례11】 조합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1991. 3. 5, 중노위 90부노 232)

【판례12】 노동조합 가입추진 등의 활동을 지도하는 동안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없이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1991. 12. 10, 대법 91누 3789)

【판례13】 실장직에 있는자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이라 해서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의 의무가 소홀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임원이 된 근로자에 관하여는 조합측에서 근무부서전환등 적절한 조치를 사용자와 교섭하에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노조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직 보직을 면한 조치는 기업의 업무수행이나 쟁의행위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1963. 7. 8 보노정 145.5-11942)